2021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86호

2021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1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1. 4. 19(월) ~ 5. 20(목) 18:00 까지**

<2021년 신기술(NET)인증 연간 접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제3회	2021. 7. 12(월) ~ 2021. 8. 12(목)

○ 접수절차

- ① 온라인 접수 후[www.netmark.or.kr]
-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 <u>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온라인 작성·출력 후</u> 대표 날인)는 반드시 원본 제출
 - ※ <u>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①번 신청서)이</u>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21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 서류형트 (온라인 자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촉진법 시행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촉진법 시행 결지서소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별지서소 (통허자료 제출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특허자료 제출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학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온라인 접수) (조라인 접수)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규칙 교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촉진법 시행 열지서스 실 선정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서스 열지서스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4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5 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u>,</u>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서수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⑤ 「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u>.</u>
신청서식 및 수비서류 (온라인 정수) (통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온라인 정수) 전쟁시구 (#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⑤ 「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정)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구비서류 (온라인 (온라인 저수)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온라인 지는지에 대한 국제표순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청수\	능)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三ノ
8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0)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심	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_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 청구항 등을 반드시 제출	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계	성)를
참고사항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 ,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이 확인되어야 학	f
(<u>기관당 최소 30% 이상</u>)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
○ 접구된 자유는 점차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등의 값이 - · · · · · · · · · · · · · · · · · · ·	_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 <u>.</u>	,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 2021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①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산업기술혁신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촉진법 시행규칙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서식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신청서식	(특허자료 제출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및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구비서류	⑤「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온라인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접수)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 (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	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	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고 인력	증기간이 종료되기	
	4개월 전에 해당되는 신기술		
	○ 신청제외 :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판매된 경우 〈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 타 : <u>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u>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www.netmark.or.kr→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해당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카드결제, 개별통보)**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022~3 팩스 02)3460-9029

- 끝 -